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사후관리 소홀

기 관 명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사하구, 연제구

내 용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,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여야 한다.

한편 부산광역시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사하구, 연제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한 식육판매, 식육포장처리 등 25개 업체에 대하여 총 31회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하였고, 이들 업체에 대하여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 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.

그런데 강서구 등 5개 구·군은 아래 【표】와 같이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을 받은 25개 업체 중 15개 업체 15건에 대하여 처분일 부터 6개월 이내 출입·수거·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

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【표】 행정처분 업소 6개월 이내 출입검사 등 미이행 명세

연 번	처분 기관	업종	업체명	처분유형	처분일 자	위반내용
1	○○ 구	식육포장 처리업	○○○○○○ (주)	과징금 부과	2014. 2.2.	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
2			○○○○	영업정지	2014. 3.19.	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·운영 미준수
3			○○○○		2014. 5.8.	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위반
4		식육판매업	○○○○		2014. 5.29.	축산물 표시기준 위반(유통기 한 초과표시)
5		식육포장 처리업	○○○	과징금 부과	2014. 10.31.	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해동하 여 유통, 판매
6		유통전문 판매업	(주)○○○○ ○	영업정지	2014. 10.31.	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보관
7	○○ 구	식육포장 처리업	○○○○	영업정지	2014. 1.14	냉동포장육의 냉장유통
8		식육판매업	○○○○	과징금 부과	2014. 5.12	거래내역서 미작성
9			○○○○ ○○○○		2014. 11.17	축산물의기준 및 규격위반
10		식육포장 처리업	○○○○	영업정지	2014. 12.9	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
11	○○ 군	식육포장 처리업	(주)○○	영업정지	2014. 1.9	업종위반(미신고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)
12		식육판매업	○○○○○○		2014. 9.30	거래내역서 미작성
13	○○ 구	식육포장	○○○○		2014. 12.5	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
14		처리업	○○○○○○			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유통
15	○○ 구	식육판매업	○○○(주)		2014. 7.22	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

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, 금정구청장, 기장군수, 사하구청장, 연제구청장은

【주의】 앞으로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출입·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